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471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4718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가단24867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각

변론종결 2022. 12. 8.

판결선고 2023. 1. 12.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가단24867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0.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9. 5.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112,581,713원의 범위 내에서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581,7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항소 후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4쪽의 라.항 기재 ‘소극재산’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분	내역	평가액(원)	비고
조세 채무	국세 채납액	513,427,077	이 사건 순번 1 내지 6 국세채권 및 그 가산금 합계액
	지방세 채납액	69,671,800	
은행 채무	F은행	113,304,774	위 서울 강남구 D건물, I호에 대한 근저당채무 (채권최고액 219,700,000원)
	O조합	293,000,000	
	Q조합	169,000,000	

사인 채무	피고 차용금	81,450,000	
합계		1,239,853,651	
기타 채무	P 차용금	알 수 없음	위 서울 강남구 D건물, 1호에 대한 근저당채무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 제1심판결 4쪽 제7행의 ‘원인하여’를 ‘원인으로’로, ‘매매대금’을 ‘매매대금은’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제9~10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Q조합 중원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6쪽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B의 무자력 여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합계 1,086,940,420원 상당이었고, B의 산정 가능한 소극재산은 1,239,853,651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서울 강남구 D건물, 1호에 관하여 P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결국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 제1심판결 7쪽 제16행의 ‘원고의’를 ‘B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쪽 제19행의 ‘사실을’을 ‘사실은’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원, 판사 이주현, 판사 김진철

별지